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9일, 서명옥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2. 19.)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

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제75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48,522건,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25,739건인데, 아동학대를 한 행위자는 부모가 85.9%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1,336건으로 가장 많았음. 그럼에도, 학대판단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보호조치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아울러 최근 5년간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21년 정점에 이르렀다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23년에도 전체 학대 판단 건수의 15.7%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23년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 4,048건에도 원가정보보호 조치를 받은 사례가 3,365건으로 8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취지는 보호자의 부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통계에 기초하여 볼 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정으로 피해아동을 돌려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아동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조치라 하겠음. 특

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가정환경조사서에는 심리치료 결과, 신체건강상태 등 아동·보호자의 심신상태 및 가정복귀 의사, 보호자의 아동 양육계획, 가정 내 청결 상태 등 양육 환경 조성 정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바, 개정안을 통해 이를 실질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2016. 3. 22. 「아동복지법」 개정(2019. 3. 23. 시행)으로 도입(제4조제3항)되었고, 「UN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원가정 보호 원칙’의 보완 및 개선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에 따른 구체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